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취득·처분”을 “취득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취득하거나 처분”을 “취득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상법」 제542조의16제1항을 준수할 것

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“지급(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”을 “지급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”을 “자기주식”으로 한다.

제176조의7제4항 중 “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”를 “「상법」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주식보유처분 계획상의 예정된 보유 기간을 말하며, 보유 기간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상법」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기주식의 취득·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2026년 3월 6일 이전에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) ① ~ ④ (생략)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. 1. 특정금전신탁인 경우[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(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·처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 가. (생략) <u>나.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것</u> 다. (생략) 라.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<u>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</u> <u>< 신 설 ></u> 2. 3. (생략) 제176조의2(자기주식의 취득·처	제106조(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득</u> ----- 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< 삭 제 ></u>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득하지</u> ----- ----- <u>마. 「상법」 제542조의16제1항을 준수할 것</u> 2. 3. (현행과 같음) 제176조의2(자기주식의 취득·처

분기준) ① (생략)

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.

1. ~ 5. (생략)

6. 처분(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) 후 3개월간 또는 취득(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) 후 6개월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임직원에게 대한 퇴직금·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(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

마.· 바. (생략)

사. 「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

아. 국가 또는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

분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

----- 지급하는 경우

마.· 바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(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).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.

자.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

차.·카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「상법」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.

⑤ (생략)

⑥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삭 제>

차.·카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자
기주식을-----

1. ~ 5. (생략) 제176조의7(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<u>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.</u>	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176조의7(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 「상법」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상의 예정된 보유 기간을 말하며, 보유 기간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상법」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91